

202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부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안)

2022. 9.

ITP 인천테크노파크
INCHEON TECHNOPARK

부리산업일자리센터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 신·구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변경(개정)																
제5조 (참여자격 및 제한) (p.3)	① (이하생략)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별첨 3]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에 포함되는 뿌리기업 2. (이하생략) 3. (신설)	① (좌 동)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3]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좌 동) 3.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뿌리기술(공정) 활용업종과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품)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별도의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받은 기업																
[별첨 6] 세부평가 기준 (p.6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colspan="2">평가지표</th> <th>평가방법</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0%;">자격심사</td> <td style="width: 10%;">뿌리기업 여부</td> <td style="width: 60%;"> ▪ (이하생략)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u>뿌리기업 업종분류 번호</u> </td> <td style="width: 20%;">적/부</td> </tr> </tbody> </table>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자격심사	뿌리기업 여부	▪ (이하생략)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u>뿌리기업 업종분류 번호</u>	적/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colspan="2">평가지표</th> <th>평가방법</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0%;">자격심사</td> <td style="width: 10%;">뿌리기업 여부</td> <td style="width: 60%;"> ▪ (이하생략)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u>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기업,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 받은 기업</u> </td> <td style="width: 20%;">적/부</td> </tr> </tbody> </table>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자격심사	뿌리기업 여부	▪ (이하생략)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u>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기업,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 받은 기업</u>	적/부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자격심사	뿌리기업 여부	▪ (이하생략)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u>뿌리기업 업종분류 번호</u>	적/부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자격심사	뿌리기업 여부	▪ (이하생략)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u>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기업,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 받은 기업</u>	적/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선정절차	2
제3장	협약	6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지급	8
제5장	특약사항	13
[서식]		15
[별첨]		4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02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지원사업”이라 함은 인천소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말하며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별첨 1] ‘지원 가능 항목’과 같다.
 1. 기술 지원(시험분석 지원)
 2. 시제품 지원(시제품 제작)
 3. 기업지원(디자인 개발, 홍보영상 및 사진, 박람회 참가)
 4. 근로환경개선 지원(근로환경 개선, 작업장 안전 확보지원)
- ② “전담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광고·선정·관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테크노파크를 말한다.
- ③ “주관기업”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공정기술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 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④ “공급기업”이라 함은 “주관기업”의 지원분야별 지원사업의 공급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⑤ “사업비”라 함은 주관기업이 본 지원사업의 기업지원에 필요한(부가가치세 미포함) 경비로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기업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채용약정인원” 이라 함은 주관기업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채용을 약정한 인원을 말한다.

제2장 선정절차

제3조(사업공고)

- ① 전담기관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 공고에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은 공고내용을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서비스(이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접수)

-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분야별로 공급기업을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즈오케이를 통해 [서식 1]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및 [별첨 2] ‘사업신청 제출 서류’에 지정된 제출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참가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보완조치(회신)가 없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참여자격 및 제한)

①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주소지를 ‘인천광역시’ 로 두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2021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뿌리기업이어야 한다.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3]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으로 인증된 사업장
3.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뿌리기술(공정) 활용업종과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품)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별도의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받은 기업

② 제1항을 만족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 [매출액 감소율]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공고 마감일 기준 20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8년, 19년, 20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2. [고용감소율]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3. [위기산업군] [별첨 4] ‘1차 금속 제조업 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에 속하거나 생산 제품을 고려하여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채용을 약정하여야 한다.

1. 지원금 1,500만원당 1명 의무채용 약정(최대 3,000만원, 2명)
2. 채용약정인원은 협약일로부터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1년(365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채용약정인원 중 1명 이상은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용서비스 등록자(워크넷 등록 구직자 및 재직자)로서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제약 없음.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 ④ 주관기업은 지원사업별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내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첨 5]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자격심사/서류평가)

- ①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 자격심사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뿌리기술 전문가 및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조정 위원회 Pool 내 서류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1인)에 의한 자격심사/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격심사/서류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서식 7] ‘자격심사/서류평가표’와 같으며,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자격심사/서류평가의 합격으로 한다.
- ③ 자격심사/서류평가의 평가기준은 [별첨 6] ‘세부 평가기준’과 같다.

제7조(현장평가)

- ① 전담기관은 자격심사/서류평가를 합격한 주관기업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뿌리기술 전문가 및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조정 위원회 Pool 내 현장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2인)에 의한 현장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현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서식 8] ‘현장평가표’ 와 같으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현장평가의 합격으로 한다.
- ③ 현장평가의 평가기준은 [별첨 6] ‘세부 평가기준’ 과 같다.
- ④ 동점 시 선정 기준은 지원시급성, 일자리평가, 사업적정성 고득점 기업 순으로 한다.

제8조(원가계산)

- ① 전담기관은 현장평가위원회 선정대상 기업의 사업비에 대해 외부 원가계산 기관을 선정하여 원가계산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원가계산은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협약체결을 위한 적정 사업비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원가계산 결과가 사업비 대비 $\pm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주관기업 선정)

- ① 현장평가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 조정 등을 하여 주관기업 및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전담기관은 원가계산 결과가 적정한 기업에 대해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은 최종 선정결과에 대하여 주관기업에게 통보하고 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선정결과의 통보 이후 협약 체결을 위한 일체의 사항들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협약 체결을 아 니 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선정된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약포기 및 기타 지원 제외사항 발생 시 후보기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주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협 약

제10조(협약)

- ① 선정된 주관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전담기관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서식 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2. [서식 9]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협약서’
 3. [서식 10]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4. [서식 1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 ③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아니 할 수 있다.
 1.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 종합의견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협약관련 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4. 주관기업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5. 주관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6.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제11조(협약변경) 협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① 협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변경 및 주관기업의 인수합병, 법인사업자 전환, 사업비 변경 등의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기업이 사업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업은 협약변경 사항에 따른 구비서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식 18] ‘사업 변경 신청서’
 2. 평가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비서류

변경 내용	준비서류
최종 사업목표 또는 내용의 하향 변경	· 사업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변경 (대체, 분사, 탈퇴, 추가 등)	· 변경 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기업)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변경 후 기관(기업)에 대한 정보자료
단가 1억원 이상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 전후 비교표 · 관련 견적서 및 카탈로그

3. 전담기관 승인사항

변경 내용	준비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재직여부 증빙서류
단일 품목으로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 전후 비교표 · 관련 견적서 및 카탈로그
사업비의 비목별 20%이상 변경	· 변경 내역

제12조(협약해약)

-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6.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의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8. 주관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9.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10.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 ② 주관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 19] ‘사업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 지원의 집행중지, 지원제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관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지급

제1절 사업관리 및 평가

제13조(사업관리)

- ① 전담기관은 필요시 중간점검을 주관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기한 및 요령은 사전에 안내토록 한다.
- ② 전담기관은 점검사유가 발생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현장 확인 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1. 협약 해약 사유 발생시
 2. 계획서 대비 진도 부진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③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종합 검토결과 “계속”, “중단”, “보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며, 중단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계속 : 중간점검 시 사업계획서 상 계획된 추진일정 및 사업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성이 인정되며 협약 사업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중단 : 주관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사업 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3. 보류 : 진도점검 결과 기술적 검토 및 판단을 위해 평가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 ④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결과가 중단일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 ⑤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결과가 보류일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주관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 20] ‘사업완료 기간연장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은 전담기관 또는 현장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 제출)

- ① 주관기업은 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이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업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식 1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 [서식 13]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송금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포함)
 3. 기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
-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 미제출 시 제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제15조(채용약정인원 채용)

- ① 주관기업은 채용약정한 인원 이상을 협약일로부터 협약 종료기간 이전까지 채용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채용약정인원이 포함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 채용약정인원의 근로계약서
 3. [서식 14] ‘채용약정인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4. 채용약정인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② 근로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인원은 채용약정인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채용약정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 자
 3.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주40시간 월 최저임금 기준)
 4.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자
 5.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제16조(최종 결과평가)

- ① 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의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채용약정인원 고용확인 등을 최종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장평가위원회 Pool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2인)에 의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공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2. 실패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

- ② 최종 결과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서식 15] ‘최종평가표’ 와 같다.
- ③ 최종 결과평가의 평가기준은 [별첨 6] ‘세부 평가기준’ 과 같다.
- ④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상급기관 및 주관기업의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제17조(사업비의 구성)

- ① 지원사업 각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사업비” 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구성하되,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 ②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사업비를 교부받을 법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또는 회사명 표기)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지원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관기업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관리)

- ① 사업비는 사업완료 정산 시 협약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소요명세 품목별 집행현황을 평가하게 되며, 주관기업은 각 품목별 거래이체 내역서 및 품목명세가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 ②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사업비의 정산)

- ①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을 위한 정산보고서를 주관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정산 회계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주관기업의 장은 제4항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된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 ④ 주관기업은 사업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최종 정산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상급기관(인천광역시 등)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지급)

-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업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여 최종평가를 통과하고 채용약정인원의 채용이 확인되었을 시, 정부지원금을 주관기업에 지급한다.
- ② 주관기업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기업부담금과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공급기업에 지급완료 하여야한다.
- ③ 전담기관은 지원금 지급 시 주관기업의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관기업이 제12조에 해당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④ 전담기관은 사업결과보고 및 고용성과 확인 후 지원금을 주관기업에 지급한다.
- ⑤ 주관기업은 제16조 제1항을 ‘성공’으로 통과하였을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확정된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서식 16] ‘지원금 지급 요청서’
 - 2. 주관기업 통장 사본
 - 3.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4. 이행보증보험 증권(채용약정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21조(사업비의 부정수급)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사업진행 중이나 사업완료 이후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협약 파기, 사업비 환수 등 각종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사업자 결격사유, 채용약정인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2조(사업추진 보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급기관(인천광역시 등)에 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주관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경우
- ②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재확정) 한 경우
- ③ 정부지원금의 교부 결정 및 정부지원금의 확정을 완료한 경우

제23조(사업결과의 공개)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수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을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24조(사후관리)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수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 및 채용 약정인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서식 21] ‘만족도 조사’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 간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5장 특약 사항

제25조(고용유지)

- ① 주관기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채용약정서를 제출하고 채용약정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1. 주관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지원금 15백만원 당 신규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한다.(협약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
 2. 주관기업은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 내에 채용약정한 신규인력을 채용 후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중도퇴사 인원의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일까지 근무일을 일할 계산하여 1년에서 뺀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대체

채용하여 유지해야 한다.

3. “채용약정한 신규인력” 이라 함은 (주민등록등본 상)대한민국 국민에 한하며 주관기업 대표 및 임원의 직계가족, 친인척(4촌 이내)의 채용은 제외한다.
4. 전담기관과 주관기업의 채용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를 36개월 간 제한한다.

② 주관기업은 제1항 제2호의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 “대체채용인원” 의 근로계약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3. 전담기관이 채용인원에 대한 유지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기타 자료

제26조(참여제한)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제3항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참여를 [별첨 7] ‘참여제한 기준표’ 의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서 식

[서식 1]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6
[서식 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7
[서식 3]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21
[서식 4]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 위촉승낙서	22
[서식 5]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23
[서식 6]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서명록	24
[서식 7]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자격심사/서류평가표	25
[서식 8]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현장평가표	26
[서식 9]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협약서	27
[서식 10] 사용인감계	30
[서식 1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31
[서식 1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결과보고서	32
[서식 13]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정산보고서	37
[서식 14] 채용약정인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	41
[서식 15]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최종평가표	42
[서식 16] 지원금 지급 요청서	43
[서식 17] 지원사업 조기종결 신청서	44
[서식 18] 사업 변경 신청서	45
[서식 19] 사업 포기 신청서	46
[서식 20] 사업완료 기간연장 신청서	47
[서식 21]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서	48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공장업종 분류번호	
	상시근로자수	명	채용계획	명
	주소			
	주생산품/		주요납품처	
	뿌리업종	<input type="checkbox"/> 주조 <input type="checkbox"/> 용접 <input type="checkbox"/> 소성가공 <input type="checkbox"/> 열처리 <input type="checkbox"/> 표면처리 <input type="checkbox"/> 금형 <input type="checkbox"/> 사출·프레스 <input type="checkbox"/> 정밀가공 <input type="checkbox"/> 적층제조 <input type="checkbox"/> 로봇 <input type="checkbox"/> 센서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엔지니어링 설계		
	뿌리기업확인서	<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뿌리기술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위기산업군 여부	<input type="checkbox"/> 1차 금속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부품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위기산업군 : 업종분류번호 및 생산 제품을 고려하여 판단예정			
	매출액 감소율	%	*고용감소율	%
매출액 감소율 :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20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18년, 2019년, 2020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고용감소율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5% 이상 감소)				
총괄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직위	/	휴대전화	
	E-mail		팩스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직위	/	휴대전화	
	E-mail		팩스	
<p>인천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기업명 :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 : _____ (인)</p> <p>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p>				
제출서류				
1.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3.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4. 공장등록증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19년, 2020년, 2021년)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표준재무제표(2019년, 2020년, 2021년)		8. 국제·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9.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1. 가점서류(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알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 광역시 우수기업 인증기업(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		

1. 신청배경 및 필요성				※ 작성요령 - 신청 항목별 추진계획 및 내용 등 자세히 작성 -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 - -							
2. 사업개요							
○ ○ - -							
3. 추진계획 및 내용							
○ 근로환경개선 항목 선택 시 현장사진 첨부 필수(시설 개보수 지원 시 건축물현황도 제출 필수) ○ - -							
4. 사업비의 구성 및 산출내역							
구분	항목	단가(원)	수량	소요 금액 (천원, 부가세 제외)			공급기업명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총액	
기술지원 ①	ex) 시험분석비	20,000,000	1	16,000	4,000	20,000	
	소계			16,000	4,000	20,000	
시제품제작 ②	ex) 시제품제작 위탁비	12,500,000	1	10,000	2,500	12,500	
	소계			10,000	2,500	12,500	
사업화지원 ③	ex) 박람회 참가비	5,000,000	1	4,000	1,000	5,000	
	ex) 홍보동영상 제작비						
	ex) 제품 디자인 개발비						
	소계			4,000	1,000	5,000	
근로환경개선 ④	ex) 휴게실 공사비						
	ex) 체력단련실 공사비						
	ex) 안전헬스 공사비						
	ex) 미끄럼 방지 공사비						
	소계						
합계 : ①+②+③+④ (천원단위 절사, 부가세 제외)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총액	비고
				30,000	7,500	37,500	

5. 채용계획

○ 채용약정인원에 대한 채용 계획

○

번호	업무형태	경력사항	업무
1	e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신입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생산직 <input type="checkbox"/> 연구직(설계,R&D)
2	ex) 2년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신입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생산직 <input type="checkbox"/> 연구직(설계,R&D)

6. 추진 일정

○

No.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일정(개월)			비고
			+1	+2	+3	
1	과제협약	과제계획 및 협약				
2	○○ 공사	○○ 시험분석				
		○○ 시제품 제작				
		○○ 박람회 참가				
		○○ 시철 철거				
		○○ 시설 보수				
3	약정인원 채용	채용광고 (워크넷 등)				
		면접				
		채용				
4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7. 정량지표

○ 정량지표 (신청한 지원항목별로 작성)

지원항목	세부 지원항목	건수, 명
기술지원	시험분석 건수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건수	
사업화 지원	디자인 건수	
	영상 및 사진제작 건수	
	판매상담 건수	
근로환경개선	근로환경개선 건수	
	작업장 안전 확보지원 건수	

8. 기대효과

○

○

-

-

첨부 서류 :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세 사양서 등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1. 기업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참여 : 접수/지원 등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기업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4대보험 가입현황 • 이메일 • 연락처 •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를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업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제3자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군·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본원 업무 관련
제공하는 기업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4대보험 가입현황 • 이메일 • 연락처 • 공장등록증 등 사업 참여 신청을 목적으로 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정보수집 동의 거부권리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를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등 사업의 신청, 수혜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 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4의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운영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동의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평가위원 위촉승낙서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 번호	-	담 당 (부서)
주 소		
전 화	() -	휴대전화
e-Mail		
계좌번호	(은행명 :)	
평가수당	자격심사/서류평가 수당	1건당 7만원
	현장평가 수당	2시간 이내 20만원
		2시간 초과 25만원

상기 본인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승낙합니다.

2022. . .()

평가위원명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평가수당 지급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속 및 직위(담당업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화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휴대전화 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e-mail 주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팩스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좌번호
보유·이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10년 <input type="checkbox"/> 30년 <input type="checkbox"/> 준영구 <input type="checkbox"/> 영구
보유·이용 근거	인천TP 「개인정보보호지침(2016. 12. 29 제정)」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평가수당 등이 미지급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평가수당 지급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번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10년 <input type="checkbox"/> 30년 <input type="checkbox"/> 준영구 <input type="checkbox"/> 영구
보유·이용 근거	인천TP 「개인정보보호지침(2016. 12. 29 제정)」 제12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평가수당 등이 미지급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수집·이용 목적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평가수당 지급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번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10년 <input type="checkbox"/> 30년 <input type="checkbox"/> 준영구 <input type="checkbox"/> 영구
보유·이용 근거	인천TP 「개인정보보호지침(2016. 12. 29 제정)」 제12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인천광역시(군, 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본원 업무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평가수당 등이 미지급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 . .()

동의자 확인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명록 -

일시 : 2022. . .()

내용 :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평가

참석자명

구분	기관명	성명	직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자격심사/서류평가표

과제현황

		평가일	
분 야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	
업 체 명		총사업비(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과 제 명			

자격심사 (지원사업 대상여부 확인)

No	항목	검증 내용	통과 여부	No	항목	검증 내용	통과여부
1	위기산업군		O X	4	기업소재지		O X
	매출액 감소율			5	부채비율		O X
	고용감소율			6	기업규모		O X
2	뿌리기업 확인		O X	7	국세, 지방세 완납		O X
3	상시근로자수		O X	8	4대보험 완납		O X
						자격심사 결과	적합 부적합

서류평가 (자격심사 적합 시 서류평가 진행)

평가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점				득점
업력유지 (10)	업력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뿌리기술 활용 업력 평가 (사업자등록증 기준) 	9년 이상	6년 이상~9년 미만	6년 미만~3년 이상	3년 미만	
			10점	8점	6점	4점	
기업 안정성 (30)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평균 매출액 감소여부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대비 19년, 20년, 21년 매출액 평균) 	5% 이상	4% 이상~5% 미만	3% 이상~4% 미만	3% 미만	
	이자보상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평균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금융비용)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20년, 21년 평균) 	1 이하	1.2미만~1.1초과	1.4미만~1.2이상	1.4이상	
	매출액 영업이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20년, 21년 평균) 	3% 미만	5% 미만~3% 이상	7% 미만~5% 이상	7%이상	
성장 가능성 (20)	유형자산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평균 유형자산 증가 여부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대비 19년, 20년, 21년 유형자산 평균) 	3% 미만	5% 미만~3% 이상	7% 미만~5% 이상	7%이상	
	연구개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평균 유형자산 증가 여부 (연구개발비/매출액)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20년, 21년 평균) 	3% 미만	5% 미만~3% 이상	7% 미만~5% 이상	7%이상	
고용 안정성 (40)	고용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평균 고용증가율 (증가인원/전체 직원수) (19년 말 상시 근로자 수 대비 19년, 20년, 21년 말 상시근로자 수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 	5% 미만	10% 미만~5% 이상	15% 미만~10% 이상	15% 이상	
			20점	17점	14점	12점	
	청년근로자 장기근속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상 장기 근속 여부 (청년 39세 이하 5년 이상 근속근로자수/전체 직원수) (21년 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3% 미만	5% 미만~3% 이상	10% 미만~5% 이상	10% 이상	
			20점	17점	14점	12점	
가점(6) (중복가능)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가점 3점				
	지역위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뿌리산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또는 유관기업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가점 3점				
총 점(100+α)							

※ 공고마감일 기준 '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기업은 '18, '19, '20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평가위원 :

(인)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현장평가표

과제현황

		평가일	
분 야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		
업 체 명	총사업비(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과 제 명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별 배점					평가 점수	
		수	우	미	양	가		
사업적정성 (40)	· 사업의 필요성	10.0	10.0	8.0	6.0	4.0	2.0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0	10.0	8.0	6.0	4.0	2.0	
	· 사업계획의 적절성	10.0	10.0	8.0	6.0	4.0	2.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0.0	10.0	8.0	6.0	4.0	2.0	
지원시급성 (20)	· 사업 후 기대효과	20.0	20.0	16.0	12.0	8.0	4.0	
사업비적정성 (40)	· 공급기업 컨소시엄 적절성	20.0	20.0	16.0	12.0	8.0	4.0	
	· 지원항목별 사업비 적절성	20.0	20.0	16.0	12.0	8.0	4.0	
가점	· 가점항목당 5점, 최대 2개 10점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 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 (비전기업, 유망 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총 평가점수(100+α)								

평가의견	
------	--

평 가 위 원 : (인)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

2022년도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전담기관”)와 (주)○○○○○○(이하 “주관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명 :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 과제명 :
- 협약대상자
 -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주관기업 :
- 사업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 사업비(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 원)
 - 지원금 : ₩ 원
 - 주관기업 부담금 : ₩ 원
 - 합 계 : ₩ 원

제1조(목적)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이행)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주관기업의 역할) 주관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업은 사업 수립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지원 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역할) 전담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접수 및 검토
2.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3. 사업수행의 중간점검, 최종평가
4.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지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의 수행)

1. 주관기업 및 전담기관은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책임 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1.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2.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하고, 사용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해석상 의문이 되는 사항,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시 관계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비밀유지) 주관기업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며,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약의 효력 및 관리)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주관기업 및 전담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사업비 지급과 관리)

1. 사업비는 주관기업이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100%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보고 시 소요명세 품목별 집행 결과를 증빙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최종평가와 정산보고를 통과하고 채용약정인원의 채용을 확인한 후 주관기업으로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며, 주관기업의 회계정산 불인정금 발생,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정부, 인천광역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킴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천테크노파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천테크노파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뿌리 업종	<input type="checkbox"/> 주조 <input type="checkbox"/> 용접 <input type="checkbox"/> 소성가공 <input type="checkbox"/> 열처리 <input type="checkbox"/> 표면처리 <input type="checkbox"/> 금형 <input type="checkbox"/> 사출·프레스 <input type="checkbox"/> 정밀가공 <input type="checkbox"/> 적층제조 <input type="checkbox"/> 로봇 <input type="checkbox"/> 센서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엔지니어링 설계			
과 제 명				
사업기간				
주관기업	기업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전화	
신청 항목	구 분		공급기업명	사업비(원)
	<input type="checkbox"/> 선택	기술지원		
	<input type="checkbox"/> 선택	시제품 제작		
	<input type="checkbox"/> 선택	사업화 지원		
	<input type="checkbox"/> 선택	근로환경개선 지원		
합 계(원)				
사업비(원)	합 계		지원금비율(%)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총괄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p>「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기 업 명 :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대 표 자 :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p>				
제출서류	1.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지출관련 증빙 2. 사업수행 결과물 증빙(인증서, 검사결과서, 검수확인서, 시험성적서, 도면 등) 3. 4대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채용확인 증빙 4. 그 외 필요시 요청 서류			

I. 사업내용

가. 주요 내용 및 사업효과

신청 배경	(사업신청 이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심으로 기술)
사업 결과	(사업계획서 상 기술한 계획 달성도 등 사업 결과를 상세히 기술)
사업 효과	(사업 종료 후 계획 및 사업의 기대 효과)

나. 최종결과물 사진 및 설명(양식 수정 변경 가능)

사업 전	사업 후
[1-사진]	[1-사진]
[1-설명]	[1-설명]
[2-사진]	[2-사진]
[2-설명]	[2-설명]

2. 사업비 정산

가. 사업비 총괄

구 분	금 액	구성비(%)
정부지원금		*소수둘째자리까지
자기부담금		*소수둘째자리까지
합 계		100%

나. 집행 내역

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내역					
※ 소요금액 천원단위 절사. 필요시 줄 추가하여 작성					
구 분	공급기업명	항 목	협약 예산(원)	집행 금액(원)	잔 액(원)
기술 지원 ①					
시제품 제작 ②					
사업화 지원 ③					
근로 환경 개선 지원 ④					
합 계 : ①+②+③+④ (부가세 제외)					

※ 소요 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세분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부가세 미포함으로 정산함)를 첨부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3. 고용창출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고용 효과	사업 전	고용 목표	명
		전체 인력	명
	사업 후	고용 인력	명
		전체 인력	명

가. 채용약정인원 채용현황

성명	생년월일	현직장 고용형태	현재 직무	현재 업무	이전 직장명	이전 직장직무	이전 직장업무
배OO	91.05.23	정규직	연구직	과제 수행	(주)OOOO	연구직	연구개발
이OO	78.06.26	계약직(2년)	생산직	과제 수행	(주)OOOOO	생산직	품질관리

나. 신규 고용인력 운영사항

- 신규 고용인력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정량실적

구 분	선도·모듈형 기업 지원		건수, 명
정량지표	기술지원	시험분석 건수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건수	
	사업화 지원	디자인 건수	
		영상 및 사진제작 건수	
		판매상담 건수	
	근로환경개선	근로환경개선 건수	
		작업장 안전확보 지원 건수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결과보고서는 사업결과 및 사업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이미지를 모두 첨부하여 컬러로 작성하여 검토자가 개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 요망
- 주관기업, 과제명 : 해당 주관기관 및 과제명 기재
- 사업기간 : 협약서에 명시한 기간과 동일하게 기재
- 제출일 : 주관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 기입(사업기간 내)
- 대표자 : 주관기업 대표자명 기재
-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물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정리하고, 사업전후를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비용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주관기관이 원본대조필(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비 정산보고서

가. 사업비 총괄

과 제 명				
사업기간				
주관기업	기업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전화	
사업비(원)	합 계		지원금비율(%)	*소수둘째자리까지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나. 집행 내역

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내역					
구 분	공급기업명	항 목	협약 예산(원)	집행 금액(원)	잔 액(원)
기술 지원 ①					
시제품 제작 ②					
사업화 지원 ③					
근로 환경 개선 지원 ④					
합 계 : ①+②+③+④ (부가세 제외)					

※ 소요 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세분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부가세 미포함으로 정산함)를 첨부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통장사본 첨부 필수)

다. 항목별 집행내역

1) 기술 지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원)	증빙자료
계			

2) 시제품 제작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원)	증빙자료
계			

3) 사업화 지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원)	증빙자료
계			

4) 근로환경개선 지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원)	증빙자료
계			

5) 잔액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원)	증빙자료
계			

라. 증빙자료

- ※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첨부 필수(사본도 따로 제출)
- 증빙자료는 각 내역별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결과조회서 or 입금확인증

구 분	증빙자료

구 분	증빙자료

당사는 위의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비 정산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회계정산 결과에 따른 불인정금 발생 시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인정금을 제외한 지원금 지급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2 . . .

주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뿌리산업 선도 · 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최종평가표

과제현황

		평가일	
분 야	뿌리산업 선도 · 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업 체 명		총사업비(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과 제 명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별 배점					평가점수
			수	우	미	양	가	
사업비 집행 적절성	· 견적서 대비 사업비집행 내역	25.0	25.0	21.0	17.0	13.0	9.0	
수행 목표 달성 수준	·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25.0	25.0	21.0	17.0	13.0	9.0	
	· 사업 달성도	25.0	25.0	21.0	17.0	13.0	9.0	
	· 채용약정 신규인력 운용의 적절성	25.0	25.0	21.0	17.0	13.0	9.0	
총 평가점수								

평가의견	
------	--

평 가 위 원 : (인)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조기종결 신청서

과 제 명	
사업기간	
주관기업명	
지원사업 달성유무	
채용약정 인원 채용유무	
사업비 집행 완료 유무	
기타사항	

당사는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신규채용과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지원사업 조기종결을 신청합니다.

2022 . . .

주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 변경 신청서

과 제 명					
주관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연 락 처		
공급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연 락 처		
변 경 전	내용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변 경 후	내용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변경사유					
향후계획					
기타사항					

당사는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내용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

주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 포기 신청서

주관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연 락 처	
지원분야			
선정금액			
포기사유			

당사는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사업 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

주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완료 기간연장 신청서

과 제 명			
주관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연 락 처	
변 경 전 완료일자			
변 경 후 완료일자			
변경사유			
향후계획			
기타사항			

당사는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사업완료 기간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

주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202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Q1.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만족하셨나요?

- ① 매우만족 ②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④, ⑤" 경우, 답변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기입해주세요.

Q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진행 후 얼마의 매출 증대가 예상 되시나요?

- ① 20% 이상 증가 ② 10 ~ 20% 증가 ③ 0 ~ 10% 증가 ④ 증대없음 ⑤ 매출감소

"⑤" 선택시, 감소원인 및 금액을 상세히 기입해주세요.

Q3.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의 사업화 지원 항목 진행 후 기업 및 제품 홍보효과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시나요?

- ① 해당없음 ② 증대없음 ③ 10% 미만 ④ 10 ~ 20% ⑤ 20 ~ 30% ⑥ 30% 초과

Q4.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의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진행 후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증가가 얼마나 예상 되시나요?

- ① 해당없음 ② 5명 이상 증가 ③ 3~4명 증가 ④ 1~2명 증가 ⑤ 증대없음 ⑥ 감소

Q5.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진행 후 산업재해율 감소가 얼마나 예상 되시나요?

- ① 해당없음 ② 감소없음 ③ 10% 미만 ④ 10 ~ 20% ⑤ 20 ~ 30% ⑥ 30% 초과

Q6.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진행 후 종사자 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시나요?

- ① 5명 이상 증가 ② 3~4명 증가 ③ 1~2명 증가 ④ 증대없음 ⑤ 감소

"⑤" 선택시, 감소원인 및 인원을 상세히 기입해주세요.

Q7.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이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하다 생각하나요?

- ① 예 ② 아니요

- 답변에 따른 의견을 상세히 기입해주세요.

2022 . . .

주관기업명 :

대표자 : (인)

별첨

[별첨 1] 지원 가능 항목	50
[별첨 2] 사업신청 제출 서류	51
[별첨 3]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52
[별첨 4]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9
[별첨 5]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61
[별첨 6] 세부 평가기준	62
[별첨 7] 참여제한 기준표	64

지원 가능 항목

구분	지원범위	지원분야별 지원 가능 항목	
기술 지원	시험분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비 지원 ex) 인장시험, 피로시험, 염수분무시험 등 * 국내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등의 시험비만 인정 	
시제품	시제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 위탁비용 지원 	
사업화	디자인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포장, CI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지원 	
	홍보영상 및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및 제품 홍보동영상, 사진촬영 및 제작비 지원 	
	박람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시회 참가비, 참가부스 설치비 지원 	
근로 환경 개선	근로 환경 개선	공사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렌탈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작업장 안전 확보 지원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헬스, 미끄럼방지 바닥 공사 등

사업신청 제출 서류

구분	No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필수	1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부
	3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4	공장등록증 1부 (사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9, '20, '21) 각1부 (사본) ※ 19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기간 : '2019.12.31.~2019.12.3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사본)
	7	표준재무제표('19, '20, '21)(이익계산서 포함) 각1부 (사본) ※ 공고 마감일 기준 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8, '19, '20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8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9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본)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1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선택 (해당시)	12	서류평가 가점 서류 각1부 (사본), 최대 1개에 대해 3점 인정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현장평가 가점 서류 각1부 (사본), 최대 2개에 대해 10점 인정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기업(비전기업, 유망 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1. 주조산업 (17)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31	주철관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9230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열처리산업 (2)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0	공업용로, 전기로

4. 표면처리산업 (1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관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관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관 제조업
28909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표면처리), 아크 용접기 및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용접)
29299	금속 표면처리기

5. 소성가공산업 (10)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6. 용접산업 (7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5	용접봉
26224	전자부품 실장기관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29199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7. 사출·프레스산업 (2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292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8. 정밀가공산업 (3)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21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9. 적층제조산업 (1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산업 (4)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1	기타종이가공기계

11. 로봇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2. 센서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 1차 금속 제조업

구분	분류번호	항목명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24312	강 주물 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4322	동 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구분	분류번호	항목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No	지원제외 대상
1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3년 동안 평균매출액 대비 최소 5%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② 직전 3년 동안 평균고용률 대비 최소 5% 이상 고용이 감소한 기업 ③ 위기산업군 :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6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7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8	2021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9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20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11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2	『2022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에서 '기업성장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3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14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5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16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17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18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9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세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자 격 심 사	뿌리기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 코드 해당기업,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 받은 기업 	적/부
	참여대상 기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매출액 감소율 :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시작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 고용 감소율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최소 5% 이상 감소한 기업 - 위기산업군 :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24XXX, 30XXX) 및 생산 제품 고려 	적/부
	상시 근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시 적합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적/부
	기업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소재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천(제조시설 기준)일 경우 적합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준 	적/부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면 적합(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부적합) - 20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0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적/부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적합 - 20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1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0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기준 	적/부
	국세 및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준 	적/부
	4대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준 	적/부
	자격심사 항목 모두 적합 시 통과		통과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서류평가	업력유지	■ 뿌리기술 활용 업력 평가(사업자등록증 기준)	10점
	매출액	■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 평균 대비 2019년 매출 비율 -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대비 '19년, '20년, '21년 매출액 평균	10점
	이자보상 배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20년, '21년 평균	10점
	매출액 영업이익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20년, '21년 평균	10점
	유형자산 증가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유형자산 증가여부 -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대비 '19년, '20년, '21년 유형자산 평균	10점
	연구개발 비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연구개발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 - 표준재무제표기준, '19년 대비 '19년, '20년, '21년 유형자산 평균	10점
	고용증가율	■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고용증가율(증가인원/전체 직원수) - '19년 말 상시 근로자 수 대비 '19년, '20년, '21년 말 상시근로자 수 평균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	20점
	청년근로자 장기근속률	■ 5년 이상 장기근속 여부(39세 이하 청년 5년 이상 근로자수/전체 직원수) - 21년 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 - 업력기준 5년 미만 사업장은 최고점처리	20점
	가 점	■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여부(가점 3점)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지역위기산업(가점 3점) - 뿌리산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또는 유관기업(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항목별 배점은 서류평가표 참조)		
현장평가	사업적정성	■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정성평가	40점
	지원시급성		20점
	사업비적정성		40점
	가 점	■ 가점 서류 1개당 5점, 최대 2개 10점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기업(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평가위원 2인의 현장평가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100점 +α
최종평가	사업비 집행 적절성	■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정성평가	25점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25점
	사업 달성도		25점
	채용약정 신규인력 운용의 적절성		25점
	평가위원 2인의 최종평가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표

□ 주관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주관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업이 지원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 하는 경우 ·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운영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년 (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또는 운영지침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채용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36개월)